

실험실습기자재선정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각 학부(과)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정·구매하여 본 대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할 실험실습기자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그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정보처장, 공과대학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 위원은 실험실습비 관련된 학부(과)장(사범대학 1명, 공과대학 4명, 예술대학 3명)으로 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시설관재과장으로 한다.

제3조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과)별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의 중·장기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2. 학부(과)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 확보기준에 관한 사항
3. 공동활용기자재 우선 구매 등 전체 기자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기자재의 중복구매 및 분산배치 지양에 관한 사항
5. 기자재 선정시 규격서의 검토, 구매시기 결정 및 설치장소·주변기기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기획예산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개최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본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득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수렴 및 기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시설관재과에서 관장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실험실습기자재선정위원회 규정(8-19-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